법률문체에서 문체론적표현수법의 갈래

우 철 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남이 리해하기 힘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남이 리해하기 어려운 글을 써야 유식하고 고상한것처럼 여겼습 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며 또 그런 글은 고 상하다고 볼수도 없는것입니다.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게 쓴 글이라야 잘된 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48권 430폐지)

오늘 조선에서는 언어생활분야에서 고 유한 언어요소들이 지배하는 가장 인민적 인 문체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날로 발전풍부화되여가고있다.

문체론적표현수법은 구체적인 문체나 문 맥에서 표현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식 적으로 가공한 언어적인 문법 또는 그 체 계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론적표현수법은 언어실천의 필수적 요구로부터 끊임없이 창조되며 구체적인 글의 기능적요구에 맞게 더욱 가꾸어지고 다듬어진다.

법률문체는 문학예술문체나 보도문체와 같은 형상적인 문체가 아니라 과학기술문체와 같은 론리적인 문체라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문체에서 문체론적표현수법이 전혀 쓰이지 않는것이 아니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표현수법에는 무 엇보다먼저 되풀이법이 있다.

되풀이법은 한 문장안에서 같은 단어나 표현, 구조를 되풀이하여 쓰는 방법으로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문체론적수법이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되풀이법은 우선 특정한 어느 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하는 수법이다.

례1: <u>로동</u>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u>로</u> <u>동</u>이 즐거운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 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7조)

례2: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u>8시간</u> 일하고 <u>8시간</u> 쉬고 <u>8시간</u>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3조)

례3: <u>동일한</u> 로동을 하며 <u>동일한</u> 기술을 가진 로력자에게는 년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u>동일한</u> 임금을 지 불한다.(로동법령 제7조)

례1에서는 《로동》이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되여 쓰임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로 동의 뜻이 강조되고있으며 례2에서는 8시 간이라는 단어가 세번이나 반복된다.

례3에서는 《동일한》이 세번이나 되풀이 되여 《로동》과 《기술》, 《임금》에 각각 얹 히면서 표현됨으로써 근로대중에게 가장 공정한 권리를 주는 인민적시책이 정확하 고 명료하게 표현되여있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되풀이법은 또한 어느 한 단어만을 강조하는것이 아니라 런 달아 일어나는 행동이나 많은 대상에 균등 성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사상과 주장을 론 리정연하게 표현하는데 쓰인다.

례1: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u>거나</u> 가지고있었<u>거나</u> 사용하였<u>거나</u>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u>거나</u>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u>거나</u> 사람을 죽게 한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15조) 례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

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u>위하여</u>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0조)

례1에서는 《거나》라는 접속토를 다섯번이나 반복사용하는것을 통하여 폭발물의제조와 보관, 사용, 이관 등과 관련한 있을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시켜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례2에서는 보조동사《위하여》가 되풀이되여 사용됨으로써《투쟁》의 목적을 상세하고 박력있게 렬거하여주었다.

법률문체에서는 감정정서적어휘나 생활 적인 어휘의 되풀이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 적인 문체와는 달리 사회정치용어 또는 그 와 관련되는 단어들을 되풀이하거나 일정 한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들을 되풀 이하는것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표현수법에는 다음으로 벌림법이 있다.

벌림법은 하나의 문장안에서 내용적인 련관을 가지고있는 단어나 어구를 병렬적 으로 렬거하여 배렬함으로써 표현적효과를 달성하는 수법이다.

벌림법은 우선 하나의 류개념적인 단어나 표현으로 추상화, 일반화하여 표현할수 있는 내용을 종개념적인 단어나 표현들로 구체화하여 나타내려고 할 때 리용된다.

례1: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u>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u> 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론동법》제50조)

례2: 학교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

교, 중학교 같은것이 속하며 사회교육기 관에는 <u>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u> <u>회관, 소년단야영소</u> 같은것이 속한 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 장법 제24조)

례3: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생산물판매수입, 상품판매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료금수입, 임가공수입 기타 수입을 부문별로 갈라 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47조)

례1에서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 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 신교육은《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는 하나의 단어결합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러 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구체적인 종개념에 포함되는것들을 하나하나 렬거함 으로써 표현내용을 더욱 명백히 강조하여 주고있다.

례2에서는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 관에 어떤 대상들이 포함되는가를 구체적 으로 렬거해줌으로써 법조항의 내용을 쉽 게 리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례3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질수 있는 수입류형의 종개념들에 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표현내용을 강조하여주고있다.

벌림법은 또한 문장속에서 꼭같은 단어 결합의 형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도 이루 어질수 있다.

례: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 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토지개혁법령)

우의 실례에서는 《-지 못하다》라는 형 태를 가진 단어결합이 반복렬거되여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의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되고있다.

우의 실례의 경우에는 되풀이법과 렬거

법이 동시에 적용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문체에서 벌림법은 표 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 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과 학성과 정밀성을 보장하여주는 표현적요 구를 실현시켜주는데서 효과적인 표현수 법으로 된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표현수법들에는 다음으로 점충법이 있다.

점충법은 단어나 표현을 의미적인 충계 가 이루어지도록 배렬함으로써 표현적효과 를 높여주는 문체론적수법이다.

점충법에서는 단어나 표현을 낮은데로 부터 높은데로, 약한데로부터 강한데로, 포괄범위를 좁은데서부터 넓은데로 혹은 그 반대로 배렬함으로써 단어나 표현들이 의미에서 충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점충법은 우선 수량적인 개념을 단계적 으로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주려는 사상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강조하여준다.

례: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궁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수행하여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사회주의로동법》제20조)

우의 실례에서는 《일별, 월별, 분기별》 과 같이 기간을 점차 많은 차례로 서술함 으로써 그날 계획을 그날로 완수하며 인민 경제계획의 법적과제를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요구를 명확히 밝히고있다.

점충법은 또한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배렬함으로써 내용적인 폭과 정도를 구체화하여준다.

례1: 하천은 규모에 따라 <u>대하천, 중하천</u>, 소하천으로 나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제3조)

례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u>위원</u> 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

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3조)

례1에서는 하천에 포함되는 류형을 그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 구체화하였 으며 례2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 구성을 직위가 높은 순서부터 차례로 배렬하여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질수 있게 하였다.

법률문체에 쓰인 점충법은 문학문체에 서의 점충법처럼 감정정서적효과, 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 호소성과 같은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더 힘있고 박력있게 하여 문체의 공식성과 품위를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표현수법에는 다음으로 대구법이 있다.

대구법은 서로 의미적인 련관을 가지는 사실이나 현상을 짝을 맞추어 나란히 놓음 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수법이다.

대구법은 원래 운률을 필수적인것으로 하는 시나 가요에서 생겨난 수법이다. 그런 데로부터 문학문체에서 광범히 리용된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대구법에는 완전 한 어구의 형식을 갖추고 내용적인 매듭을 지으면서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례: 대하천의 정리는 국토환경보호기 관이, 중소하천의 정리는 중소하천관리 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 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제 10조)

우의 실례에서 보면 서로 독립적으로 매듭지어진 두개의 어구가 복합문의 형식으로 대구를 이루면서 《대하천과 중소하천》이 내용적으로 서로 대칭되게 짝을 이루고있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표현수법에는 다음으로 자리바꿈법이 있다.

자리바꿈법은 문장안에서 의도적으로 문 장성분의 자리를 바꾸어놓는 방법으로 표 현적효과를 달성하는 표현수법이다. 조선어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다. 그렇기때문에 문장성분의 자리가 바뀔 때 맞물림관계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표현적색채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자리바꿈법은 우선 진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시하려는 부분을 문장의 맨앞에 놓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례1: <u>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u>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제26조)

례2: <u>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u>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제27조)

우의 실례들에서 보면 《지도는, 감독통제는》은 문장성분으로 볼 때 보어이므로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장들에서 보면 진술의 중심은 누가 지도하고 누가 감독통제하는가 하는 보어이기때문에 대격로 《를/을》이나 조격로 《로/으로》를 사용하지 않고 제시적인의미를 가지는 도움토 《는/은》을 사용하여 문장의 맨앞에 놓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단순히 문장성분의 순서만 바꾸는것이 아니라 강조하려는 성 분의 일부 문법적형태까지도 바꾸게 된다.

자리바꿈법은 또한 제시구조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여도 어떤 성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차례를 바꾸어 문장의 맨앞에 놓는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다.

례: <u>사회주의하에서</u>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 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제1조)

우의 실례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로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동에 대한 기본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어를 문장의 맨앞에 놓은것이다.

이처럼 자리바꿈법은 진술내용의 중심으로 되거나 강조하려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놓음으로써 글의 정확성과 명료 성을 보장하며 글을 박력있게 표현하여 준다.

그러나 법률문체에서는 다른 문체들에 서처럼 술어가 문장의 맨앞에 오거나 규정 어가 피규정어의 뒤에 오는것과 같은 자리 바꿈은 절대로 할수 없다.

법률문체에서 쓰이는 표현수법에는 다음으로 옮김법이 있다.

옮김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 서 옮겨놓는 수법이다.

옮김법에는 바로옮김법과 풀어옮김법이 있다.

바로옮김법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음으로 써 서술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 는 수법이다.

풀어옮김법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 하는 수법이다. 즉 글쓰는 사람자신이 옮 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표현수법은 법률문체에서 재판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는데 많이 쓰인다.

(필자는 중국박사원생임)